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철성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박철성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1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당초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함)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조례 위임근거가 삭제되어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 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무 차체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고,

기관위임사무는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물론  
상위 법에서 위임근거까지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